

품격 높은 문화복지가 실현되는 곳



사 회 복 지 법 인
대명문화복지재단

대명노인전문요양원

수신처 : 내부결재

(경유)

제 목 : 2025년 제2분기 시설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

1. 대명노인전문요양원 2025년 제2분기 시설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
고 그 결과를 보고하오니 검토 후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5년 6월 23일(월요일) 17:00-18:00
2. 장소 : 1층 회의실
3. 대상 : 전체위원 6 명
4. 의제 : 2025년 2분기 사업보고 건 및 요양원옥상 태양광설치 건

붙임1. 2025년 제2분기 회의자료 및 회의록 1부. 끝.

대명노인전문요양원장



담 당

협조자

시행 대명 25-6232 (2024.6 23)

접수

우 330-763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향로 989

전화 041-554-9004, 070-4244-8004 전송 041-621-9004

사무국장

시설장

/ [http:// www.dmcwf.com](http://www.dmcwf.com)

/ eoaudansghk@hanmail.net / 부분공개

운영위원회 회의록(2025년도 2분기)

(이경하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부터는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양원 시설 내 비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025년 2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6명 중 모든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성원이 되었기에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미리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에 따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 보고사항은 2025년도 2분기 사업보고의 건입니다.

2분기에는 어르신 총 57명(남자 9명, 여자 48명)을 모시고 직원 41명이 어르신 급여 제공을 하였으며 특히 옥상방수작업과 배수로 흡관 교체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인해 장마 대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2호 보고사항은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교육 실시에 관한 내역입니다.

2025년도 2분기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3호 보고사항은 지난 분기에 이어 2025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요양원은 금년도 3분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전 직원이 합심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보고사항은 요양원 옥상 태양광 설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간사위원인 최창성위원께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성위원)

(주)경인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당 요양원 옥상에 태양광을 총 사업비 98,500천원 중 보조 54,070천원, 자부담 44,430천원으로 93,440KW 규모로 설치하여 매월 25.4% 대체 사용하는 것으로 약 2년 반 후에는 자부담 투자예산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춘기위원)

간사위원님의 보고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동,하절기에 600만원 이상으로 급증하고 평월에도 200만원이상 지출하는 것이 부담됨으로 이번에 정부지원금 50%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처음에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운영비 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하 위원장)

이상으로 2025년도 2분기 운영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건의사항 등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환 위원)

제4호 보고사항인 요양원 옥상 태양광 설치 공사 안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왔으나 그동안 코로나 등 재정여건이 어려워 시도할 수 없었는데 자부담 부분이 어려움이 있겠으나 추후 전기료 절약 등 긍정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안치상, 최창성, 최다연, 이춘기 위원)

재청합니다.

(이경하 위원장)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옥상 태양광 설치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치상 위원)

제3호 보고사항인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는 지난 3년간 준비한 업무실적을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철환 위원)

제2호 보고사항인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교육에 관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매 분기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에 성심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엇그제(6월 21일) TV뉴스에 보도되는 학대내용을 보게 되면 보호자 입장에서 많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명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인권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시설장님의 지도·감독도 부탁드립니다.

(최다연 위원)

금년도에도 사업계획에 따라 어르신들 모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받는 평가는 평소에 준비를 많이 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위원)

어르신들을 잘 모식 위해 직원들을 교육하고 시설물 관리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애 마지막 사업이고 어르신께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어르신들을 정성스럽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하 위원장)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기타 추가의견이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십시오.(모두 보고사항에 대한 추가의견이 없음을 표명하심)

기타의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2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6. 23.

사회복지법인 대명문화복지재단 대명노인전문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하(인)

위원 노철환(인)

위원 안치상(인)

위원 이춘기(인)

위원 최다연(인)

위원 최창성(인)

2025년 제2분기 시설운영위원회 (2025.06.23.)

제1호의안 2025년 2/4분기 사업보고의 건

■ 개 요

1. 어르신연왕 :

- 남자 어르신 : 9명
- 여자 어르신 : 48명
- 연세 총인원 : 57명

2. 직원연왕

- 남 자 : 4명
- 여 자 : 37명
- 연인원 : 41명

3. 사업연왕

가. 총무과(4명) : 전체직원회의

입소 어르신 상담

각종 재알프로그램 진행

예배(주3회) 및 상담

나. 간호/재알과(3명) : 어르신 일일 라운딩

물리치료 및 기능회복훈련

다. 영양과(4명) : 어르신 식사 및 간식제공

생신잔치 프로그램

라. 관리과(2명) : 차량운영/관리

장비관리

세탁 및 청소업무

제조작업

마. 요양과(28명) 어르신 식사케어

기저귀케어

일상생활도움

정서지원

4. 예산연왕(6.21.일 연재 누책)

가. 수입부 : 930,202,271원

나. 지출부 : 922,508,309원

다. 잔 액 : 7,693,962원

제2호의안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건

제3호의안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의 건

제4호의안 옥상태양광설치의 건

별첨

기타토의 :

3/4분기에도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모시도록 시설운
영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건물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3쪽 중 제1쪽)

계 약 당사자	신청자	사회복지법인 대명문화복지재단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312-82-11105	
			주 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향로 989(봉향리 136-2)		
			연 락 처	010-3721-1918	F A X	041-553-7578
	참여 기업	(주)경인	대 표 자	김종경	사업자등록번호	853-88-00402
계 약 내 용			주 소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 66번길 16, 2층		
			연 락 처	042-823-1189	F A X	042-823-1161
	에너지원	태양광	설비타입	고정식	설치용량	93.44
	공사명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건물지원)		사업비 총액(A+B) (부가세 제외)	일금 98,500천원	
	설치장소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향로 989(봉향리 136-2)		보조금(A) (부가세 제외)	소계 (A=C+D)	일금 54,070천원
	설치기간	25년 05월 29일 ~ 25년 08 월 27 일			신재생설비 (C) (단가: 576천원/단위용량) * 만단위 미만 절사	일금 53,820천원
	예금주 (참여기업)	(주)경인	은행	기업	REMS연계 (D)	일금 250천원
	계좌번호	572-055949-01-017		설치자 분담비용 (B) (부가세 제외)	소계 (B=E+F)	일금 44,430천원
본 문 조 항					신재생설비 (E) (계약금: 4,400천원)	일금 44,180천원
					REMS연계 (F) (계약금: 천원)	일금 250천원
	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참여기업”에게 충분한 안내를 받은 후, “건물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에 날인(서명)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본 문 조 항	제2조 (계약금 지급) ①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청자”가 계약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예금주가 “참여기업”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사업의 준공) ① “참여기업”은 설치 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신청자”로부터 서명받은 설치 완료확인서 및 정부보조금 지급 동의서를 센터에 제출한 후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본 문 조 항	제4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 “신청자”는 “참여기업”이 설치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의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자 분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금주가 “참여기업”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정부보조금 지급을 위해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설치확인 완료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한 “참여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신청자”는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본문
조항
(계속)

제5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쌍방간 합의에 의해 “센터”에 사업포기 동의 및 신청을 한 경우

2.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센터”는 해당 사업에 대해 취소·포기 처리를 하고, “참여기업”은 기수령한 사업비가 있을 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단, 정부 보조금(선금금 등)의 경우, 지급받은 전액을 “센터”로 반환한다.

제6조 (보조금의 환수) “참여기업”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신청자”가 “센터”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센터”는 정부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7조 (해석) 본계약서 내용상 해석은 건물지원 사업공고, “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센터”에 신청·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관련 업무를 “참여기업”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은 “센터”에 최종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 내용이 틀림없음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특약
조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생산물책임보험 증서를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참여기업”은 “신청자” 및 “설비 설치 계획서”상 “모니터링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센터”의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연계 및 유지관리가 설치완료 이후 5년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간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의 효력을 가진다.

* 첨부 : 설비 설치 계획서 1부.

2025 년 06 월 09일

신청자 : 사회복지법인대명문화복지재단

참여기업 : 주식회사 경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청자

사회복지법인 대명문화복지재단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향로 989 (봉향리 136-2)

사업자번호

312-82-11105

전화

041-554-9004

이메일

korealcki3@naver.com

팩스

041-621-9004

이동전화

010-3721-1918

설치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향로 989 (봉향리 1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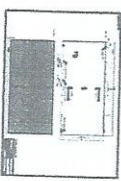
구분	사업선정	변경	차이
설치용량	99.840	93.440	6.40
총사업비	105,000,000	98,000,000	7,000,000
	500,000	500,000	-
	105,500,000	98,500,000	7,000,000
보조 (단위절사)	57,500,000	53,820,000	3,680,000
	250,000	250,000	-
	57,750,000	54,070,000	3,680,000
자부담	47,500,000	44,180,000	3,320,000
	250,000	250,000	-
	47,750,000	44,430,000	3,320,000

설치 장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항리 136-2 (봉항로 989)
 한화모듈 640Wp * 128장 = **81.92kW**



대전 유성구 계룡로66번길 16
 2층 (충청동 468-1B)
 TEL. 042) 823-1189
 FAX. 042) 823-1161
 E-mail.
 ky.solar2015@naver.com

MODULE



한화모듈 640Wp
 2등급

모듈 수량에 따라 자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듈 각도
 10°

KEY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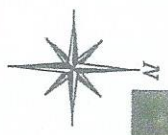
NOTE

SCALE

A3:1/NONE

DATE

2025.06.



00 태양광 - 배치도



kakao, 국토지리정보원 10m